

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(제3조제2항 관련)

폐기물의 종류	배출해역	배출방법
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	갑해역 전역	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
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	동해 병해역, 서해 병해역	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
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폐기물	동해 병해역, 서해 병해역 및 동해 정해역	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
영 별표 1 제2호의 폐기물	동해 병해역, 서해 병해역, 정해역 전역 및 무해역	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

비고

-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시멘트는 수경성(水硬性) 시멘트를 사용할 것
 - 시멘트는 콘크리트 1m³당 150kg 이상을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
 -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굳힌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kg/cm² 이상일 것
 -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
 -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
 -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
 - 최소변의 길이는 30cm 이상일 것
- 배출해역은 영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.
-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폐기물의 농도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으로,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
 - 평균 대수속도(對水速度)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
 - 합성로프, 페어구, 플라스틱류, 님마, 고무제품, 머리카락,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것
 -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(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 가공잔재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-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,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- 비중 1.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
 -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않을 것
 - 가루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
 -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않도록 처리할 것